

『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』  
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대행 추진 계획 및  
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사전 공고

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6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(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)의 규정, 「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환경부고시 제2020-125호)」에 따라 『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』 ‘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대행 추진계획’과 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안)’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.

2022. 5. 26.

국토교통부장관

1. 환경영향평가서 등 대행 추진 계획

가. 사업의 명칭 :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

나. 발 주 청 명 : 국토교통부

다. 주요 내용

- 1)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·운영 지원
- 2)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(의견수렴 포함) 지원
- 3)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개요 검토
- 4) 환경보전목표 수립
- 5) 대상지역 환경현황 조사·분석

- 6)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타당성 검토
- 7) 평가항목 및 범위 설정(Scoping)
- 8) 대안의 설정 및 환경영향 예측·평가
- 9)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
- 10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준비서, 초안, 본안, 조치계획(조치결과) 등)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
- 11) 종합평가 및 결론(근거가 되는 사항을 부록으로 첨부)

라.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

- 1) 총용역비 : 약 1,600,000천원(부가가치세 포함)
  - 2) 해당연도 예산 규모 : 약 800,000천원(1차분, 부가가치세 포함)
- ※ 총용역비는 상세 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마. 입찰공고 예정일 : 2022년 6~7월 예정(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)

※ 입찰공고 예정일은 우리부 사정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

바.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: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환경부고시 제2020-125호, 2020.6.22.)에 따라 우리부가 정함(붙임)

아. “바”항의 우리부가 정한 ‘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안)’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2일(목, 18:00한)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.

※ 서면 의견은 이메일로 제출(yyoung@korea.kr)

자. 문의처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(뱅크빌딩 7층)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(044-201-5205)

- 붙임 1.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안) 1부.  
2. 의견서(양식) 1부. 끝.